|  |  |  |
| --- | --- | --- |
|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수정)**  발개위령 제11호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진일보 촉진하여 질서있는 발전을 하고, 청정발전매커니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12일 시행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장평(张平)  과학기술부 부장 : 만강(万钢)  외교부 부장 : 양길호(杨洁篪)  재무부 부장 : 사욱인(谢旭人)  2011년 8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 규범화기 위해《유엔 기후환경변화 구조공약》(이하 《공약》), 《교토 의정서》(이하《의정서》및 공약 체결국 회의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등 유관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청정발전매커니즘은 선진국 공약 체결국이 일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약체결국과 함께 프로젝트 합작을 진행하는 매커니즘을 말하며, 프로젝트 합작을 통해《공약》의 최종목표 실현을 촉진한다. 개발도상국 공약체결국에 협조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며, 선진국 공약체결국의 계량화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공약을 실현한다.  **제3조** 중국에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에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공약》,《의정서》및 공약체결국 회의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전략, 정책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은 환경에 이로운 기술양도를 촉진해야 하며, 중국에서 합작을 전개하는 중점 분야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 제고, 신형 에너지이용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 메탄가스 회수이용이다.  **제5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시행은 반드시 투명성, 고효율을 보증해야 하며, 각 프로젝트와 체결측의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6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합작 진행 과정 중, 중국 정부와 기업은《공약》과《의정서》규정 외에 어떠한 의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국외 합작측이 사용하는 배출량 감소 자금은 반드시 정부측 발전원조 자금과 그《공약》에 의거하여 이행해야 하는 자금의무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관리체제**  **제8조** 국가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이하 “프로젝트 심사이사회”)를 설립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팀장 단위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이며, 부팀장 단위는 외교부이고, 구성원 단위는 재정부, 환경보호부, 농업부와 중국기상국이다.  **제9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합작의 주관기구이며, 중국에서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 프로젝트를 전개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중국 경내의 중자(中资), 중자(中资)투자기업은 프로젝트 시행기구며, 법률에 따라 대외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합작을 전개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보고에 대한 심사 진행, 심사의견 제출  (2) 국가에 기후변화 지도급 그룹에 대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집행상황과 시행과정 중의 문제 및 건의 보고, 국가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규칙과 관련된 건의사항 제출  **제12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신청 접수  (2)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외교부와 회동하여,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비준  (3)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비준함(批准函) 발급  (4)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 시행  (5) 기타 관련 업무의 처리  **제13조**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배출량감소 거래의 대외협상 담당, 협의 체결  (2) 청정발전매커니즘 츠로젝트의 공정건설 책임  (3)《공약》,《의정서》와 공약체결국 화의의 규정 및 국외합작측 협의 서명 요구에 따라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프로젝트 소재지의 발전개혁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4) 국제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 합격성과 배출량 감소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한 자료와 감측기록 제공. 실태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과 상업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의 상황 보고  (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프로젝트 소재지의 발전개혁위원회에 협조하여 관련문제 조사, 질의 회신  (7) 기업자질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고  (8) 본 방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해진 액수의 배출량 감소 거래액 납부  (6)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타 의무에 대한 책임  **제3장 신청과 시행절차**  **제14조** 첨부문건에 열거된 중앙기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 프로젝트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나머지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한다. 유관부분과 지방정부는 기업을 조직하여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실제 수요에 따라 적시에 첨부문건의 중앙기업 명단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프로젝트의 소재지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 청정발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신청서  (2) 기업자질 정황 증명 문건 사본  (3) 공정 프로젝트 가행성 연구보고 비복(또는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증명) 사본  (4) 환경영향평가보고서(또는 등기표) 비복 사본  (5) 프로젝트 설계 문건  (6) 공정 프로젝트 개황과 자금 상황 증명  (7)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기타 자료의 제공  **제16조** 만약 프로젝트의 심사보고 시, 국외 구매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프로젝트 신청표를 기입할 때 반드시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 프로젝트의 단독측 프로젝트를 주를 달아 기록한다. 국가의 비준을 받은 후, 프로젝트로 얻은 배출량 감소 수입은 중국 국가계좌로 전입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배출량 감소는 중국국가계좌로부터 전출된다.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첨부문건의 중앙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불완전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료에 대해, 반드시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정이 필요한 내용 전부에 대한 1차 고지를 해야 한다.  **제18조**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는 첨부문건에 열거된 중앙기업 외의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신청을 받은 후 20일 업무일 내에 프로젝트 신청자료 및 1차 심의 의견 전부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신청에 부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료가 불완전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는 즉시 또는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내용 전부에 대한 1차 고지를 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본 방법 첨부문건에 열거된 중앙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 신청을 받거나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신청을 받은 후에,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청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하며, 심사평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의 심사평가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프로젝트 심사이사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가 심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프로젝트 참가측의 참가자격  (2) 본 방법 제15조 규정에 제출한 관련 비복  (3) 방법학 응용  (4) 온실가스 배출감소량 계산  (5) 온실가스 배출감소량 양도 가격  (6) 배출감소량 구매자금의 액외성(额外性)  (7) 기술양도 정황  (8) 예측 계산 배출감소량의 양도 기한  (9) 감독 측정 계획  (10) 지속발전 촉진 기대효과  **제21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외교부와 회동하여 비준함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에 대해 프로젝트 비준을 동의할 경우, 프로젝트 수리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전문가 심사평가 기간 불포함) 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에 대해 비준을 동의하나, 수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시행기구로부터 수정자료를 수령한 후, 과학기술부와 외교부와 회동하여 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22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경영실체가 청정발전매커니즘 집행이사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제23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시행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등록 후 10일 업무일 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등록 정황을 보고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매 배출감소량과 양도 후 10일 업무일 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발급, 양도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절차와 심사비준 권한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5조** 본 방법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신청과정 중,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보증이 필요한 내용 전부를 1차 고지 하지 않은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개정을 명령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6조** 본 방법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접수, 수리, 심사비준 프로젝트 신청 및 프로젝트 시행 감독조사 과정 중,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타 이익을 침해,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범죄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7조** 본 방법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비준을 하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지분을 결정할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개정을 명령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28조**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신청 및 시행과정 중 허위 자료를 제공 하거나 유관상황을 은폐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리 또는 행정허가를 하지 않으며, 경고 해야 한다.  **제29조** 프로젝트 시행시구가 기만, 뇌물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비준함을 취득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프로젝트 배출감소량 양도 수입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수입은《행정처벌법》등 유관규정에 따라 현지 중앙 국고에 상납한다.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30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준함을 발급한 후, 기업의 지분변경이 외자 또는 외자 투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시행자격은 상실되며 투자 변경 후 취득한 배출량 감소 양도 수입은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제31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배출량 감소 거래 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한에 따라 국가에 정해진 액수의 배출량 감소 거래액을 배당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기구에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32조**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비준함을 위조, 임의 수정 또는 감독조사 시 허위 자료 또는 유관정황의 기만, 관련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5장 부 칙**  **제33조** 본 방법 중의 선진국 공약체결국은《공약》첨부문건 1에 열거된 국가를 가리킨다.  **제34조** 본 방법 중의 청정발전매커니즘 집행이사회는《의정서》에 따라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관리기구를 가리킨다.  **제35조** 본 방법 중의 경영실체는 청정발전매커니즘 집행이사회가 지정한 심의결정 및 심의증서 기구를 가리킨다.  **제36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소득 이익은 국가와 프로젝트 시행기구 소유이며, 기타 기구와 개인은 배출량 감소 양도거래액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와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분배비율은 아래와 같다.  (1) 플루오르화탄소(HFC)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65%를 수취한다.  (2) 이원산 생산 중의 아산화질소(NO)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2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30%를 수취한다.  (3) 질산 등을 생산하는 산화2질소(NO)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2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10%를 수취한다.  (4) 과불화화합물(PFC)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5%를 수취한다.  (5) 기타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2%를 수취한다.  국가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로부터 배출 감소량 양도 거래액으로 수취한 자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활동 지원, 대처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중국 청정발전매커니즘 기금관리센터는《중국청정발전매커니즘 기금관리방법》에 따라 수취해야 한다.  **제3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미 비준한 2012년 이후 생산하는 배출 감소령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양도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시행은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 외교부, 재정부가 상의하여 해석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행관리방법》은 즉시 폐지한다. |  | **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  **管理办法（修订）**  发改委令第11号  为进一步推进清洁发展机制项目在中国的有序开展，促进清洁发展机制市场的健康发展，我们对《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管理办法》进行了修订。现予发布，自发布之日起施行。  2005年10月12日施行的《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管理办法》同时废止。  国家发展改革委主任：张平  科技部部长：万钢  外交部部长：杨洁篪  财政部部长：谢旭人  二〇一一年八月三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和规范清洁发展机制项目的有效有序运行， 履行《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以下简称《公约》）、《京都 议定书》（以下简称《议定书》）以及缔约方会议的有关决定，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等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清洁发展机制是发达国家缔约方为实现其温室气 体减排义务与发展中国家缔约方进行项目合作的机制，通过项目合作，促进《公约》最终目标的实现，并协助发展中国家缔约方实现可持续发展，协助发达国家缔约方实现其量化限制和减少温室气体排放的承诺。  **第三条** 在中国开展清洁发展机制项目应符合中国的法律法规，符合《公约》、《议定书》及缔约方会议的有关决定，符合中国可持续发展战略、政策，以及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总体要求。  **第四条** 清洁发展机制项目合作应促进环境友好技术转让， 在中国开展合作的重点领域为节约能源和提高能源效率、开发利用新能源和可再生能源、回  收利用甲烷。  **第五条** 清洁发展机制项目的实施应保证透明、高效，明确各项目参与方的责任与义务。  **第六条** 在开展清洁发展机制项目合作过程中，中国政府和企业不承担《公约》和《议定书》规定之外的任何义务。  **第七条** 清洁发展机制项目国外合作方用于购买清洁发展机制项目减排量的资金，应额外于现有的官方发展援助资金和其在《公约》下承担的资金义务。  **第二章 管理体制**  **第八条** 国家设立清洁发展机制项目审核理事会（以下简称项目审核理事会）。项目审核理事会组长单位为国家发展改革委和科学技术部，副组长单位为外交部，成员单位为财政部、环境保护部、农业部和中国气象局。  **第九条** 国家发展改革委是中国清洁发展机制项目合作的主管机构，在中国开展清洁发展机制合作项目须经国家发展改革委批准。  **第十条** 中国境内的中资、中资控股企业作为项目实施机构，可以依法对外开展清洁发展机制项目合作。  **第十一条** 项目审核理事会主要履行以下职责：  （一）对申报的清洁发展机制项目进行审核，提出审核意见；  （二） 向国家应对气候变化领导小组报告清洁发展机制项目执行情况和实施过程中的问题及建议，提出涉及国家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规则的建议。  **第十二条** 国家发展改革委主要履行以下职责：  （一） 组织受理清洁发展机制项目的申请；  （二） 依据项目审核理事会的审核意见，会同科学技术部和外交部批准清洁发展机制项目；  （三） 出具清洁发展机制项目批准函；  （四） 组织对清洁发展机制项目实施监督管理；  （五） 处理其他相关事务。  **第十三条** 项目实施机构主要履行以下义务：  （一）承担清洁发展机制项目减排量交易的对外谈判，并签订购买协议；  （二）负责清洁发展机制项目的工程建设；  （三）按照《公约》、《议定书》和有关缔约方会议的决定，以及与国外合作方签订购买协议的要求，实施清洁发展机制项目，履行相关义务，并接受国家发展改革委及项目所在地发展改革委的监督；  （四）按照国际规则接受对项目合格性和项目减排量的核实，提供必要的资料和监测记录。在接受核实和提供信息过程中依法保护国家秘密和商业秘密；  （五）向国家发展改革委报告清洁发展机制项目温室气体减排量的转让情况； （六）协助国家发展改革委及项目所在地发展改革委就有关问题开展调查，并接受质询；  （七）企业资质发生变更后主动申报；  （八）根据本办法第三十六条规定的比例，按时足额缴纳减排量转让交易额；  （九）承担依法应由其履行的其他义务。  **第三章 申请和实施程序**  **第十四条** 附件所列中央企业直接向国家发展改革委提出清洁发展机制合作项目的申请，其余项目实施机构向项目所在地省级发展改革委提出清洁发展机制项目申请。有关部门和地方政府可以组织企业提出清洁发展机制项目申请。国家发展改革委可根据实际需要适时对附件所列中央企业名单进行调整。  **第十五条** 项目实施机构向国家发展改革委或项目所在地省级发展改革委提出清洁发展机制项目申请时必须提交以下材料：  （一）清洁发展机制项目申请表；  （二）企业资质状况证明文件复印件；  （三）工程项目可行性研究报告批复（或核准文件，或备案证明）复印件；  （四）环境影响评价报告（或登记表）批复复印件；  （五）项目设计文件；  （六）工程项目概况和筹资情况说明；  （七）国家发展改革委认为有必要提供的其他材料。  **第十六条** 如果项目在申报时尚未确定国外买方，项目实施机构在填报项目申请表时必须注明该清洁发展机制合作项目为单边项目。获国家批准后，项目产生的减排量将转入中国国家账户，经国家发展改革委批准后方可将这些减排量从中国国家账户中转出。  **第十七条** 国家发展改革委在接到附件所列中央企业申请后，对申请材料不齐全或不符合法定形式的申请，应当场或在五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  **第十八条** 项目所在地省级发展改革委在受理除附件所列中央企业外的项目实施机构申请后二十个工作日内，将全部项目申请材料及初审意见报送国家发展改革委，且不得以任何理由对项目实施机构的申请作出否定决定。对申请材料不齐全或不符合法定形式的申请，项目所在地省级发展改革委应当场或在五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  **第十九条** 国家发展改革委在受理本办法附件所列中央企业提交的项目申请，或项目所在地省级发展改革委转报的项目申请后，组织专家对申请项目进行评审，评审时间不超过三十日。项目经专家评审后，由国家发展改革委提交项目审核理事会审核。  **第二十条** 项目审核理事会召开会议对国家发展改革委提交的项目进行审核，提出审核意见。项目审核理事会审核的内容主要包括：  （一） 项目参与方的参与资格；  （二） 本办法第十五条规定提交的相关批复；  （三） 方法学应用；  （四） 温室气体减排量计算；  （五） 可转让温室气体减排量的价格；  （六） 减排量购买资金的额外性；  （七） 技术转让情况；  （八） 预计减排量的转让期限；  （九） 监测计划；  （十） 预计促进可持续发展的效果。  **第二十一条** 国家发展改革委根据项目审核理事会的意见，会同科学技术部和外交部作出是否出具批准函的决定。对项目审核理事会审核同意批准的项目，从项目受理之日起二十 个工作日内（不含专家评审的时间）办理批准手续；对项目审核理事会审核同意批准，但需要修改完善的项目，在接到项目实施机构提交的修改完善材料后会同科学技术部和外交部办理批准手续；对项目审核理事会审核不同意批准的项目，不予办理批准手续。  **第二十二条** 项目经国家发展改革委批准后，由经营实体提交清洁发展机制执行理事会申请注册。  **第二十三条** 国家发展改革委负责对清洁发展机制项目的实施进行监督。项目实施机构在清洁发展机制项目成功注册后十个工作日内向国家发展改革委报告注册状况，在项目每次减排量签发和转让后十个工作日内向国家发展改革委报告签发和转让有关情况。  **第二十四条** 工程建设项目的审批程序和审批权限，按国家有关规定办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五条** 本办法涉及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在清洁发展机制项目申请过程中，对符合法定条件的项目申请不予受理，或当项目实施机构提交的申请材料不齐全、不符合法定形式时，不一次告知项目实施机构必须补正的全部内容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二十六条** 本办法涉及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在接收、受理、审批项目申请，以及对项目实施监督检查过程中，索取或者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二十七条** 本办法涉及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对不符合法定条件的项目申请予以批准，或者超越法定职权作出批准决定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八条** 项目实施机构在清洁发展机制项目申请及实施过程中，如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的，国家发展改革委可不予受理或者不予行政许可，并给予警告。  **第二十九条** 项目实施机构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批准函的，国家发展改革委依法处以与项目减排量转让收入相当的罚款，罚款收入按照《行政处罚法》等有关规定，就地上缴中央国库。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条** 项目实施机构在取得国家发展改革委出具的批准函后，企业股权变更为外资或外资控股的，自动丧失清洁发展机制项目实施资格，股权变更后取得的项目减排量转让收入归国家所有。  **第三十一条** 项目实施机构在减排量交易完成后，未按照相关规定向国家按时足额缴纳减排量交易额分成的，国家发展改革委依法对项目实施机构给予行政处罚。  **第三十二条** 项目实施机构伪造、涂改批准函，或在接受监督检查时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或拒绝提供相关材料的，国家发展改革委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三条** 本办法中的发达国家缔约方是指《公约》附件一中所列的国家。  **第三十四条** 本办法中的清洁发展机制执行理事会是指《议定书》下为实施清洁发展机制项目而专门设置的管理机构。  **第三十五条** 本办法中的经营实体是指由清洁发展机制执行理事会指定的审定和核证机构。  **第三十六条** 清洁发展机制项目因转让温室气体减排量所获得的收益归国家和项目实施机构所有，其他机构和个人不得参与减排量转让交易额的分成。国家与项目实施机构减排量转让交易额分配比例如下：  （一）氢氟碳化物（HFC）类项目，国家收取温室气体减排量转让交易额的65%；  （二）己二酸生产中的氧化亚氮（NO）项目，国家收取温2 室气体减排量转让交易额的30%；  （三）硝酸等生产中的氧化亚氮（NO）项目，国家收取温2 室气体减排量转让交易额的10%；  （四）全氟碳化物（PFC）类项目，国家收取温室气体减排量转让交易额的5%；  （五）其它类型项目，国家收取温室气体减排量转让交易额的2%。  国家从清洁发展机制项目减排量转让交易额收取的资金，用于支持与应对气候变化相关的活动，由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中心根据《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办法》收取。  **第三十七条** 国家发展改革委已批准项目2012年后产生的减排量，须经国家发展改革委同意后才可转让，项目实施按照本办法管理。  **第三十八条** 本办法由国家发展改革委商科学技术部、外交部、财政部解释。  **第三十九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2005年10月12 日起实施的《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管理办法》即行废止。 |